

자체평가 규정

제정 2010. 9. 30
 개정 2010. 11. 15
 개정 2012. 3. 1
 개정 2017. 3. 1.
 개정 2018. 2. 28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 제1항 및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16장에 준하여 본교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체평가의 정의) 자체평가라 함은 본교가 대학 자체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문화특성화대학 위상 확립
2. 학생역량강화
3. 교수,교직원 경쟁력 강화
4. 교육과정 경쟁력 강화
5. 교육품질관리 및 책무성 강화
6. 행·재정적 지원 및 교육시설과 설비

제4조(평가시기 및 절차) ①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 단,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평가는 평가계획수립, 평가실시, 평가결과 공개의 절차로 진행된다.

제5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교내 언론매체,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.

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,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·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2장 자체평가위원회

제6조(자체평가총괄위원회) ①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하여 자체평가총괄위원회(이하 “총괄위원회”라 한

다)를 둔다.

- ② 위원은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한다.
- ③ 총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부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
-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자체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 - 2.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 - 3. 자체평가 지표와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 - 4. 자체평가 지표 실적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자체평가실무위원회)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다. 각 위원은 총장이 임명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자체평가 지표개발
 - 2.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
 - 3.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
 - 4. 자체평가 결과 분석 바탕으로 각 단위 컨설팅 기능 제공
 - 5. 평가위원회와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 보고
 - 6. 그 밖에 자체평가연구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기타)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총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